

1. 제정이유

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「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제20665호, 2025.1.21. 공포, 2026.1.22. 시행)됨에 따라, 도시형캠퍼스의 명칭, 유형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형캠퍼스의 명칭(안 제2조)

나.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규제심사 예정

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① 「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5조제2항의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본교의 명칭 뒤에 도시형캠퍼스로 개편 또는 신설되는 본교의 명칭 등을 표시한 후 캠퍼스를 마지막에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본교의 명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청(이하 “시·도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명칭으로 한다.

제3조(유형 및 종류)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편형 도시형캠퍼스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2캠퍼스 :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소규모화가 심화된 기존 학교를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학생의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분교

2. 복합형 도시형캠퍼스 : 개교 당시와 비교하여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발생한 학교의 유휴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도시형캠퍼스

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설형 도시형캠퍼스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2캠퍼스 : 학교용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학교의 과밀화 해소,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,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시형캠퍼스
2. 매입형 도시형캠퍼스 :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의 건축물 중 학교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을 매입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
3. 복합형 도시형캠퍼스 : 「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 제1항제2호의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공공업무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학교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